

#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4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6.10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○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근거인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2조가 제34조로 개정되어 동 조례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 주요골자

- 가. 동 조례의 근거 조문을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2조에서 제34조로 변경함 (안 제1조)
- 나. 사회복지 시설의 사업내용을 「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」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운영 기준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(안 제2조).
- 다.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별표로 표시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함(안제3조).
- 라. 사회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안산시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함(안제4조).
- 마.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안산시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 함(안 제5조).

##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, 동법시행규칙 제22조, 제22조의2, 제23조,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7조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기간 : 2009. 4. 20 ~ 5. 11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른 안산시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내용)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별표 1과 같다.

제3조(명칭 및 소재지) 안산시에 두는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2와 같다.

제4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사회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되 그 기능은 「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른 안산시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제5조(위탁기간) 중 “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”를 “5년 이내로 한다”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제9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중 “수탁자가 가지고 있는”을 삭제한다.

제10조(위탁의 취소)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주민생활지원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주민생활지원담당 정송자
	담당자 성명·전화	정송자 (행정 2862)

##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(제2조관련)

사업분야	단위사업명	사업내용
1. 가족복지사업	(1) 가족관계 증진 사업	○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의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·강화하는 사업(가족문제 예방프로그램 포함) -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: 가족교육, 부모교육, 가족역할훈련, 대인관계훈련, 의사소통 향상교육 등 -상담 및 검사 : 부부상담, 부모상담, 가족상담 등 (법률·의료상담, 심리검사 등 포함)
	(2) 가족기능 보완 사업	○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,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-아동 대상 프로그램 : 방과후 아동보호 및 교육 -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: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(학습 및 독서지도 포함), 사회성 향상, 감성교육, 질서पाल 프로그램, 진로탐색 및 지도, 학교사회사업
	(3) 가정문제해결·치료사업	○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·치료·사회복귀 지원사업 -신체적 장애 관련프로그램 : 장애아동 조기교육, 음악·놀이·미술 등 특수치료, 장애인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-정신적 장애 관련프로그램 : 정신보건서비스, 알콜 및 약물중독 치료, 정신장애인, 정신지체인,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 -청소년 프로그램 :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, 학교 부적응 또는 징계학생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 등 -위기가정 분개 : 이혼가정, 해체위기가정 등 -폭력·학대 : 아동학대 및 방임, 노인학대, 성폭력, 가정폭력
	(4) 부양가족 지원 사업	○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담부담을 줄여주고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-치매노인 가족지원, 장애인 가정지원, 만성질환자 부양가족모임, 장애아동 부모상담 그 밖에 부양가족 지원사업
2. 지역사회 보호사업	(1) 급식서비스	○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사업 -식사 배달, 밑반찬 배달, 경로식당운영, 무료급식
	(2) 보건의료서비스	○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를 위한 보건·의료 관련사업 -의료서비스(통원 및 방문진료), 간병서비스, 물리치료, 재활치료, 보건교육, 방문간호(보건기관 연계), 영양서비스(영양지도 및 상담)
	(3) 생계갈 지원	○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-의료비·교육비·생활비 등 지원, 후원금 제공, 생활용품 지원 등
	(4) 일상생활 지원	○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의 외출 등에서 가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-청소·세탁·정보가 취사 등 가사서비스, 복육, 이·미용, 심부름, 자택적인 주기환경개선 등
	(5) 장사지원 서비스	○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등 부양가족이 있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비문질적인 지원사업 -발땀, 안부전화 등 노인상처지원, 의령제·의부모 관계맺기
	(6) 결식보호서비스	○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신직가·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사업 -노인 주간·단기보호, 치매노인센터, 장애인 주간·단기보호, 심리적 쉼터, 노숙인 쉼터, 공동생활가정

3. 지역사회 조직사업	(1) 지역사회복지 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주민이 지역사회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,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</li> <li>-주민조직체 형성·운영 : 주민모임, 주민동아리 등</li> <li>-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: 환경운동, 소비자교발운동, 쓰레기 재활용운동 등</li> <li>-주민의식교육 : 주민지도자교육, 사회복지교육, 환경교육, 소비자교육 등</li> </ul>
	(2)복지네트워크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지역내 복지기관·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</li> <li>네트워크구축 :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, 지역내 복지시설과의 연계사업 등</li> <li>-지역복지 중심기관 역할 : 지역복지 대변자로 서의 활동, 지역문제의 발굴 등</li> </ul>
	(3) 주민복지 증진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</li> <li>-지역행사 : 경로잔치, 절기행사, 마을잔치 등 지역주민행사</li> <li>시설 개방 : 시설대여, 경로당 운영, 주민사랑방운영</li> <li>정보제공 : 일상생활 및 복지 관련정보제공</li> </ul>
	(4) 자원봉사자양성 및 후원자 발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지역사회내에서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·양성하는 사업</li> <li>-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복지사업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·관리</li> <li>○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또는 기업 등을 후원자로 개발·조직하는 사업</li> <li>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후원금품을 노인, 장애인,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전달하거나 관련복지사업비 등으로 사용</li> </ul>
4. 교육문화사업	(1) 아동·청소년 방과 후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 및 기능교실운영사업</li> <li>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타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·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교육(컴퓨터, 피아노, 미술, 태권도, 서예 등) 실시</li> </ul>
	(2) 성인기능교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(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반주민을 위한 단순기능교육을 포함)</li> <li>-조리사, 이용·미용, 양재(양재), 포장, 제과·제빵, 도배사, 에어로빅강사 등 기능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</li> <li>교양강좌 : 꽃꽂이, 서예, 독서지도, 종이접기 등</li> </ul>
	(3) 노인이가·문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</li> <li>-건강운동교실 : 체조교실, 생활체육, 단전호흡, 수영교실 등</li> <li>여가프로그램 : 노래교실, 춤교실 등</li> <li>-교양교육프로그램 : 노인대학, 컴퓨터, 한글교육 등 정보당 지원사업</li> </ul>
	(4) 문화복지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일반주민을 위한 여가·오락프로그램, 문화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</li> <li>-일반주민 여가 프로그램</li> <li>-소외집단 대상 프로그램 : 청소년 캠프, 청소년동아리, 장애인 문화체험 등</li> <li>-주민문화행사 : 영화상영, 춤추기, 음악회 등</li> </ul>
5. 자활사업	(1) 직업기능 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</li> <li>봉제, 이용·미용, 조리, 컴퓨터훈련, 공예품제작, 창업교실, 건축관련 세부기술, 서비스 교육</li> </ul>
	(2) 취업알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</li> <li>-가사도우미·살모도우미·간병인·정비직·조리원·사무원·일용직등의 알선</li> <li>취업·부업안내센터, 창업정보센터, 창업지도, 노령자취업센터</li> </ul>
	(3) 취업능력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·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</li> <li>지역봉사자를 위한 전문지도, 해원프로그램,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</li> </ul>
	(4) 자활공정 제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비슷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저소득층이 공동창업방식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또는 제품의 생산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</li> <li>-자활공동체, 공동직업장, 노인부업실, 장애인자립작업장 등</li> </ul>

[별표 2]

###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(제3조관련)

명 칭	소 재 지
군자종합사회복지관	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9번지
본오종합사회복지관	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523-1번지
부곡종합사회복지관	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1번지
초지종합사회복지관	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 3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인신적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른		삭제
	제2조(시설의 구분 및 사업내용) 이 조례에 의한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관(이하 "사회복지관"이라 한다)으로 구분한다. ② 사회복지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가정문제 종합상담, 생활보호대상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, 직업·부업 가능훈련, 취업 부업알선, 무료직업안내소운영, 보건의료서비스, 선의봉사실운영, 생활안정자금지원운영, 부녀자교양교육, 취미교실등 가정복지사업 2. 유아보호 및 교육, 탁아사업, 어린이공부방 제공,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, 아동문제예방·치료교육, 어린이복지실제공, 어린이기능교실운영(주산, 컴퓨터, 타자, 예·체능등), 자모상담 및 교육, 사랑의 교실운영, 불우아동결연 등 아동복지사업 3. 청소년상담 및 교양교육, 근로청소년사회교육, 청소년문제 예방치료, 청소년복지실제공, 청소년 기능교실운영(주산, 컴퓨터, 타자, 예·체능등), 취미지도 및 캠프집단지도체 등 청소년복지사업 4. 노인문제상담, 불우노인결연,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교육, 노인부업실운영, 노인가정봉사원파견, 노인학교운영, 노인복용서비스, 노인식사서비스등, 노인복지사업 5. 심신장애인상담, 심신장애인서비스 알선 및 이송, 자립취업장설치 운영, 제가장애인지기스 등 장애인 복지사업 6. 주민사회교육, 자원봉사자 및 지역지도자 교육과 활용, 사회조사, 무료상담시설제공, 무료예식장제공, 주민회의 교육, 이가신동시설제공, 후원자개발등 지역복지사업 7. 기타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	제2조(사업내용)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별표1과 같다.  <삭제>		

<p>제3조(명칭 및 소재지) 안산시에 두는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3조(명칭 및 소재지) 안산시에 두는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2와 같다.</p>
<p>제4조(운영의 위탁) ①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신청자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(이하"수탁자"라 한다)로 지정한다. ②제1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.</p>	<p>제4조(운영의 위탁) ①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 ②안산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되 그 기능은 「안산시사부의 민간위탁추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른 안산시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.</p>
<p>제5조(위탁기간)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&lt;신설&gt;</p>	<p>제5조(위탁기간)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</p>
<p>제9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수탁자의 의무) ..... &lt;삭제&gt; ..... ..... .....</p>
<p>제10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1.~3.(생략) 4.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</p>	<p>제10조(위탁자의 취소) ..... 각호의 어느 하나에 ..... 1~3. (취소와 같음) 4. 그 밖에 ..... .....</p>